

#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18.
복지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이진환 의원 등 5명
- 발의일자: 2025. 9. 3.(수)
- 회부일자: 2025. 9. 3.(수)
- 상정 및 의결: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25. 9. 18.)

## 2. 제정이유

-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4조~제5조)
-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19조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이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40~50대 주민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갱년기 증후군 관련 상담 및 서비스 제공,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의료기관·관련 단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매년 40만 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이 갱년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갱년기 질환에 대한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